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지원 근거 마련〉

■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303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병섭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4
1. 고문방지 및 피해자 보상·지원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4
2.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체계	9
3. 주요 조문 검토	11
가. 제명 및 목적	11
나. ‘고문’ 및 ‘고문피해자’의 정의	12
다. ‘유족’의 범위	16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8
마.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 지원 위원회	22
바. 법률·의료 및 생활 지원	35
사. 보상금등 지원 절차	39
아. 비밀누설의 금지 및 벌칙	4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배 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 7.
3. 회 부 일 : 2025. 1.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한국전쟁 전·후부터 반세기가 넘는 동안 자행된 고문 범죄에 의해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함.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실제로 고문피해자와 가족 및 유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고문피해자 및 그 가족이 고문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고문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난 7월 UN 고문방지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에 고문방지협약 선택 의정서 가입과 비준을 촉구하는 권고를 한 바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구제·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고문을 방지하고 고문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이 법의 목적 실현과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문방지및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7조).
- 다. 위원회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고문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3년마다 고문피해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라. 고문피해자 또는 고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그 유족은 위원회에 고문피해자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1조).
- 마.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고문피해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쳐 고문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신청 자격을 가짐(안 제12조).
- 바. 국가는 고문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보이는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6조).
- 사. 위원회는 고문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고문피해자 전문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고문피해자 및 그 유족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국가는 고문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자.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Ⅲ. 검토의견

1. 고문방지 및 피해자 보상·지원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고문금지 및 고문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권위주의 정권 기간 동안 권력유지를 위한 폭력적 수단으로 암암리에 고문이 자행되었고, 그 밖에 인신구속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 왔음.

< 고문 관련 국내법 규정 >

구 분	내 용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민주화로 인해 고문 방지 및 고문범죄의 처벌에 대한 입법적, 제도적 개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문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이나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음.

그동안 고문 피해에 대한 공적 지원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²⁾ 등 과거사 관련 기관들의 조사 및 재심청구와 손해배상소송 등의 법적 지원 등이 있어 왔음.

그러나, 고문 피해자의 구제·지원 절차를 살펴 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의 재심개시 결정 이후, 재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이를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해야 비로소 국가배상을 인정받는 등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의 시간 소모³⁾⁴⁾로 인해 고문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장기간의 권위주의 통치라는 역사적 특수성 및 고문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던 점, 오랜 기간이 지나 기록이 은폐·멸실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과거의 고문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고문 피해자가 대부분 고령이므로 신속한 피해 구제가 필요한 점, 진실·

1) 국가인권위원회,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1. 10.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3) 경향신문, “과거사 재심사건 선고까지 414일, 일반 재심의 3배...피해자·유족은 고통”, 2024. 6. 5.

4) 노컷뉴스, “진실화해위, ‘현행법, 피해자 직접 소송해야... 포괄적 보상법 추진’”, 2024. 5. 27.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활동이 2025년 5월 26일에 종료된 점⁵⁾ 등을 고려할 때, 고문 피해 조사기관의 상설화 및 고문 피해자의 일괄 구제를 위한 입법 필요성은 인정됨.

덧붙여, 국가기관의 고문 행위와 관련한 피해 조사 및 보상을 규정한 현행 법률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이라 함)」,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이라 함)」 등이 있는데, 이러한 법률은 범위가 특정 역사적 사건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고문 피해뿐만이 아닌 사상피해·불법구금·학사징계 등에 대한 사안도 다루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⁶⁾⁷⁾, 제정

5) 연합뉴스, “진실화해위, 오늘로 조사기간 만료”, 2025. 5. 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5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6)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 7)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안은 과거 및 미래의 사건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고문 피해에 대한 조사와 보상을 다루는 기본법으로 기능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고문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국제협약으로는 UN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이하 “UN 고문방지협약”이라 함)」이 있고, 「UN 고문방지협약 선택 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OPCAT)」는 「UN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고문방지 소위원회와 고문 예방기구의 구금시설 방문 권한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모든 종류의 구금시설 내 고문 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정서임⁸⁾.

「UN 고문방지협약」 제13조 및 제14조는 고문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평한 조사받을 권리 보장 및 재발을 포함한 완전한 피해 구제와 적절한 배상을 규정하고 있고⁹⁾, 「UN 고문방지협약

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8)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19일 「UN 고문방지협약」에 대해서는 서명(발효일 1995년 2월 8일)하였지만,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서명과 비준을 유보하고 있음.

9) 「UN 고문방지협약」

제13조 당사국은 자기나라 관할하의 영토내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권한있는 당국에 고소하여 신속하고 공평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고소인과 증인이 고소 또는 증거제공으로 인하여 부당한 취급이나 협박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조치를 취한다.

제14조 1. 당사국은 자기나라의 법체계 안에서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구제를 받고, 또한 가능한 한 완전

선택의정서」에는 수감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 제도를 이행하는 국가예방기구(National Prevention Mechanisms, NPM)의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¹⁰⁾, 제정안은 국제 인권기준과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인권 선진국으로서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 재할수단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고문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부양가족이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10)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제3조 각 당사국은 국내적으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방문 기구(이하 "국가예방기구"라고 한다)를 설립하거나, 지정하거나 또는 유지한다.

제19조 국가예방기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는다:

가. 필요한 경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4조에 규정된 구금 장소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에 대한 대우를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나.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대우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당국에 권고를 제출하고, 국제연합의 관련 규범을 고려하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예방한다. 다. 현행 법률이나 입법안에 관하여 제안이나 견해를 제출한다.

2.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체계

○ 제정안은 총 5장, 36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은 총칙 규정으로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목적, 정의, 원칙 등이 담겨 있고, 실체 규정으로 제2장에는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의 설립 근거와 구성, 실태조사, 결정 등을 규정하며, 제3장에는 제16조부터 제32조까지 고문피해자에 대한 상담, 각종 지원,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에 대한 심의와 결정 등을 규정하고, 제4장과 제5장은 각각 보칙·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의 구성 체계 >

구 분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유족의 범위)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불이익처우 금지)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고문방지및고문피해자지원 위원회	제7조(고문방지및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고문방지 교육) 제10조(고문피해 실태조사) 제11조(고문피해자 결정 신청) 제12조(고문피해자 결정) 제13조(해외신고처 설치 및 공고) 제14조(고문피해자의 장애등급 분류) 제15조(긴급구제)
제3장 고문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제16조(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제17조(전문의료센터의 지정)

구 분	내 용
지원	제18조(법률지원) 제19조(보상금) 제20조(의료지원금) 제21조(생활지원금) 제22조(보상금등의 지급 및 지원의 이용 신청) 제23조(심의와 결정) 제24조(결정서 송달) 제25조(재심의) 제26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27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28조(조세 면제) 제29조(결정전치주의) 제30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제31조(보상·지원의 환수) 제32조(시효)
제4장 보칙	제3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34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36조(벌칙)

3. 주요 조문 검토

가.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제명)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문을 방지하고 고문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법령의 제명은 그 법령의 고유한 명칭 또는 제목으로서, 알기 쉽고 간결하며 주요 규정 내용을 잘 대표할 필요가 있음¹¹⁾.

제정안의 경우 제명에서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제1조 목적 규정과 제3장(고문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제19조(보상금), 제31조(보상·지원의 환수) 및 그 밖의 조문에서 ‘보상·지원’으로 표현¹²⁾하고 있으므로, 제명을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11)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75

12) 안 제7조(고문방지및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고문피해자 보상·지원에 필요한 기금 등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9. 고문 방지와 고문피해자 보상·지원에 관한 국내·국제·외국기구와의 협력

10. 그 밖에 고문 방지와 고문피해자 보상·지원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 제33조(비밀누설의 금지) 고문피해자 보상·지원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고문’ 및 ‘고문피해자’의 정의(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문”이란 공무원·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사인이 공무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이나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법률에 따른 형집행 및 그 밖의 제재는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자기나 제3자로부터 정보 또는 자백을 얻기 위한 목적

나. 자기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기 위한 목적

다. 자기나 제3자를 협박 또는 강요할 목적

라.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

2. “고문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7조에 따른 고문방지및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고문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고문으로 인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고문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그 밖에 고문을 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동 제정안은 ‘고문’과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정립하는 기준 법률이 될 것이므로, ‘고문’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임.

안 제2조는 ‘고문’의 정의를 우리나라가 비준한 「UN 고문방지협약」

과 거의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¹³⁾, 이는 법체계의 통일성 차원

13) 「UN 고문방지협약」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에서는 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법률 또는 실체에 따라 수정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예컨대, 「UN 고문방지협약」과 제정안은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고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이 정의하는 고문의 의미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¹⁴⁾, 다른 사유(안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비교하여 “차별에 기초한다”는 법문의 해석이 다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필요성 및 구체화·명확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 밖에, 제정안에 따르면 고통을 가하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해당 행위가 고문인지 여부가 판별되는데, “공무수행자”는 현행 국내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므로¹⁵⁾, 국내법 체계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이 조는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거나 포함하게 될 국제문서나 국내입법을 해하지 아니한다.

14) 고문: 숨기고 있는 사실을 강제로 알아내기 위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며 신문함.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15) 다만, 유사한 표현으로 현행 법률에서 “공무수행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판례 및 강학상 용어로 “공무수탁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또한, 제정안은 ‘교사·동의·묵인’의 주체에 공무수행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UN 고문방지협약」의 내용과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수원고법 2020. 12. 3. 선고 2020나13522 판결]

“교통약자법 제16조에 따라 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므로, 위 택시의 운행은 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갑 회사는 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사무를 위탁받아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는데, (이하 생략)”

[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20헌가12 결정]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39조). 공공단체는 공공조합,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등을 말하고, 그 밖의 권리주체는 공무수탁사인 및 사인(사인) 등을 말한다.”

다. ‘유족’의 범위(안 제3조)

제3조(유족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민법」에 의한 고문피해자의 상속인(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구제·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안 제3조는 이 법에 따른 권리를 향유하는 유족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와 피부양자를 포함하고 있음.

○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¹⁶⁾에는 포함되지 않지만¹⁷⁾, 사실상 배우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가한 것이고,

유사 입법례인 「5·18보상법」에서도 유족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었지만, 2021년 12월 법률 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추가한 사례가 있음¹⁸⁾.

16)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7)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18) 법률 제18203호, 2021. 6. 8., 일부개정(시행 2021. 12. 9.)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에 따른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안 제3조제2항의 해석이 불명확해지므로, 「5·18보상법」¹⁹⁾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사실혼 배우자가 권리를 가지는 비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피부양자²⁰⁾”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부양자는 「민법」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제2항에 따른 상속분 또는 적정한 권리의 비율을 책정하기 곤란하고, 과거에 발생한 고문 피해 조사에 있어 서류 등 증거자료가 미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족의 범위에 피부양자를 포함할 것인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5·18보상법」 및 「부마항쟁보상법」의 경우 ‘관련자 유족’의 범위에 피부양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²¹⁾.

-
- 19)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관련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유족 중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관련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관련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관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배우자의 재산상속분으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 20)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 2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관련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유족 중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관련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관련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6조, 제30조)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문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30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고문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고문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안 제6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가 국민에 대한 보상·지원을 규정한 경우 특히 “고문 피해”에 대한 보상·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제정 법률이 다른 법률보다 특별법적 지위를 갖고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안 제30조제1항은 제정 법률이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법률의 우열 관계에 있어 안 제6조와 제30조제1항은 다소 모순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할 때에는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에 다른 법률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해당 법률과 다른 법률 간의 적용 우선순위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 법률 간에 중복·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²²⁾,

제정안이 고문 피해로 인한 다른 보상·배상 관련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가지는지 검토한 뒤에 이를 법률에 명확히 표현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민주화보상법」 및 「5·18보상법」은 안 제6조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는 한편, 안 제30조제1항과 유사한 내용과 관련하여 우선되는 법률의 제명을 구체적으로 명시²³⁾하고 있는 점에서 제정안과 차이가 있음.

- 한편, 제정안은 고문피해자가 이미 다른 법률을 통해서 보상을 받았을 경우 제정안을 통해서 중복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유사 입법례²⁴⁾를 참고하여 이미 다른 법률을 통해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차감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22)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261

23)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②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 등) ①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보임.

- 덧붙여, 안 제30조제2항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고문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 입법례인 「민주화보상법」도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²⁵⁾.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민주화보상법」의 해당 조문에 대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관련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는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위헌판결 하였음²⁶⁾.

따라서, 제정안에 고문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것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5·18보상법」도 2022년 12월 법률개정을 통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적용되지 않음을

25)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6)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바180 결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 내지 손실에 상응하는 배·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해당 손해 내지 손실에 관한 적절한 배·보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민주화보상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에 해당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관련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였음²⁷⁾.

<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관계 법령' 유사 입법례 비교 >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법령	민주화 보상법	①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u>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u>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u>
	5·18 보상법	①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차감 지급</u>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u>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u> 다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u>정신적 피해</u>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마항쟁 보상법	①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u>차감 지급</u>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28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u>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u>
	제정안	① 이 법은 고문과 관련하여 <u>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고문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u>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u>

마.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 지원 위원회

1)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27) 법률 제1910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7조(고문방지및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 ① 이 법의 목적 실현과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문방지및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문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고문방지와 고문피해자 명예회복, 구제·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정부 권고안 작성
3. 고문에 관한 제보의 접수 및 처리
4.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결정
5. 고문 관련 상이자의 장애등급 판정
6.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심의 및 결정
7.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고문피해자 전문의료센터 및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8. 고문피해자 보상·지원에 필요한 기금 등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9. 고문 방지와 고문피해자 보상·지원에 관한 국내·국제·외국기구와의 협력
10. 그 밖에 고문 방지와 고문피해자 보상·지원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고문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고문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부 권고안 작성, 고문에 관한 제보의 접수·처리, 고문피해자 해당 여부 심의·결정, 보상금 심의·결정,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 고문 관련 국내·국제·외국기구와의 협력 등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 등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1년 11월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예방조치 등의 지침 제시 및 권고 등을 결정함으로써 고문에 대한 공정한 조사 가능성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한 측면²⁸⁾도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문 등 가혹행위에 관한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각종 차별, 성희롱, 장애 등과 관련한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인권침해 행위를 모두 다루고 있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 발생 후 1년이 지난 경우와 다른 기관에 의해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과 달리 강제조사권이 없다는 점에서 입증이 어려운 고문 행위를 효과적으로 조사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따라서, 제정안과 같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고문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상·지원을 통한 피해 회복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측면이 있음.

○ 또한, 제정안은 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두고 있는데, 고문 등의 가혹행위 주체가 국가기관이므로 이를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독립기관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가 있음.

참고로,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국가예방기구를 독립

28) 고문피해자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출범 이후 2011년에 한 차례 실시되었음.(국가인권위원회,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1. 10.)

기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고²⁹⁾, 이에 따라 각국이 설치한 국가예방기구의 경우 독립기관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음³⁰⁾.

다만, 유사 입법례인 「민주화보상법」 및 「5·18보상법」의 경우 보상 심의·지원 관련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고, 행정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인 경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독립기관이 아닌 행정부 소속이므로 입법부의 감시·견제가 용이하다는 등의 장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한편, 안 제7조제1항은 “이 법의 목적 실현과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고 하여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9)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제1조 이 의정서의 목적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 독립적인 국제 및 국내 기구에 의하여 수행되는 정기적 방문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제17조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나 자국의 비준 또는 가입이 발효된 후 늦어도 1년 이내에 국내적 차원에서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 또는 수 개의 독립적 국가예방기구를 유지·지정 또는 설립한다. 지방 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들이 의정서의 조항에 부합되는 경우, 이 의정서 목적상의 국가예방기구로 지정될 수 있다.

제18조 1.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의 기능적 독립성은 물론 그 직원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30) 독일의 국가예방기구(Nationale Stelle zur Verhütung von Folter) 등

< ‘위원회 설립 취지’ 유사 입법례 비교 >

위원회 설립 취지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이 법에 따른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
	고문방지및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	“이 법의 목적 실현과 업무 수행을 위하여 ...”

- 안 제7조제2항은 위원회의 기능(소관 업무)과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주요 업무인 고문 피해에 대한 조사·보상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고문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제1호)’, ‘고문에 관한 실태조사(제2호)’, ‘고문과 관련한 국내·국제·외국기구와의 협력(제9호)’ 등 행정적 업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유사 입법례와 비교할 때 위원회의 법정 기능의 범위를 다소 넓게 규정한 것으로 보임.

< ‘위원회의 기능’ 유사 입법례 비교 >

위원회의 기능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결정 2. 관련 상이자의 장애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4. 관련자 및 그 유족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결정 2. 관련 상이자의 장애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4. 보상지원위원회의	1.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2. 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3. 관련자 중 상이를 입은 자의 장애등급 판정 4. 관련자 및 유족에	1. 고문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고문방지와 고문피해자 명예회복, 구제·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와 정부 권고안 작성 3. 고문에 관한 제보의 접수 및 처리 4. 고문피해자 또는

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마련 6. 관련자 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명예회복과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회의에 부칠 의안의 준비 및 보상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5.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그 밖의 지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1. 관련자와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지원 2.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의 모금 및 관리 4.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마련 5.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6.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그 밖의 지원	대한 보상금 등의 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5.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6.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기념시설 조성 등 관련자 추모사업 지원 8. 그 밖에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결정 5. 고문 관련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6.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심의 및 결정 7.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고문피해자 전문의료센터 및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8. 고문피해자 보상·지원에 필요한 기금 등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9. <u>고문 방지와 고문피해자 보상·지원에 관한 국내·국제·외국기구와의 협력</u> 10. 그 밖에 고문 방지와 고문피해자 보상·지원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

위원회의 법률상 기능을 넓게 규정하여 권한과 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업무 중복성·관련성, 위원회의 조직 규모(청사·직원·예산 등), 과거의 고문 사건 이외에 현재 또는 미래에 발생할 고문 현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안 제7조제2항의 ‘위원회의 기능’ 규정은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등과 관련되어 있음³¹⁾.

2) 위원회의 고문피해자 결정 등(안 제11조, 제12조)

제11조(고문피해자 결정 신청) ① 고문피해자 또는 고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그 유족은 위원회에 고문피해자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이 고문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당사자에게 고문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를 안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고문피해자 결정)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고문피해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문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사실조사를 거쳐 고문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신청 자격을 가진다.

31) **안 제9조(고문방지 교육)** 위원회는 체포·구금·심문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문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안 제10조(고문피해 실태조사) ① 위원회는 고문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고문피해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 안 제11조는 고문피해자나 그 유족이 위원회에 고문피해자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2조는 고문피해자 결정과 관련한 절차와 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민주화보상법」, 「5·18보상법」 및 「부마항쟁보상법」은 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절차적으로 그 전 단계인 ‘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심의·결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과 차이가 있음.

- 안 제11조제2항은 위원회가 특정인의 고문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당사자에게 고문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문피해자가 가지는 권리를 인지시키고 적극적 권리 행사를 독려함으로써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조치로 보임.

다만, 해당 조문의 “당사자”는 고문을 받은 당사자만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의 경우 각종 보상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고문피해자의 유족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를 안내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3) 위원회의 고문피해자 장해등급 분류(안 제14조)

제14조(고문피해자의 장해등급 분류) ① 위원회는 보상·지원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고문피해자의 장해등급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문피해자가 장해등급의 재분류를 신청하는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재분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분류 및 재분류와 신체검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고문피해자에 대한 장해등급 분류·재분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장해등급은 주로 안 제19조에 따른 보상금 액수를 산정할 때 주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4조제3항에서 장해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안 제19조제5항³²⁾에서 다시 장해등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양 규정의 중복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제정안은 위원회의 장해등급 분류 및 재분류 절차를 별도

32) **안 제19조(보상금)** ① 국가는 고문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고문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2. 고문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유족: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여·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으로 규정한 반면, 유사 입법례의 경우 안 제14조와 같은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주로 안 제19조에 상응하는 보상금 산정 조문에서 구체적인 장해등급 평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³³⁾.

4) 위원회의 긴급구제(안 제15조)

제15조(긴급구제) ① 위원회는 고문피해자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고문 피해로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생명과 건강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당사자의 요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긴급구제를 제공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2. 긴급 피난장소의 제공
3. 그 밖에 신청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일정한 경우 긴급구제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³⁴⁾

3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보상금)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 2.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와 유사한 내용인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과거의 고문피해 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고문행위도 포섭하는 법률이므로, 고문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고문행위가 완료되었어도 그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회가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유사 입법례(「민주화보상법」, 「5·18보상법」 및 「부마항쟁보상법」 등)의 경우 긴급구제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
- 3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바. 법률·의료 및 생활 지원(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16조(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① 국가는 고문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보이는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의 운영과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문의료센터의 지정) ①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문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고문피해자 전문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의료치유센터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법률지원) ① 위원회는 고문피해자와 그 유족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문피해자의 법적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 소송대리 또는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 등의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상금) ① 국가는 고문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고문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액·월실수입액

(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2. 고문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유족: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여·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② 고문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公信力)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애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료지원금) ① 고문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補裝具)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

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 ③ 고문으로 상이를 입은 고문피해자에게는 그 사람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생활지원금) ① 국가는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국가가 고문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적절한 보상금(제19조)과 의료지원금(제20조)을 지급하도록 하고,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제21조)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체적·정신적·심리적 회복과 안정을 위한 조력이 필요한 고문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제16조), 재활을 위한 전문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제17조), 법적 조력이 필요한 고문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규정에 대한 유사 입법례로 「민주화 보상법」, 「5·18보상법」 등의 보상금, 의료 및 생활지원금의 규정을 들 수 있고, 이는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덧붙여, 다음에 대해서는 추가적 검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먼저,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수혜 대상에 고문피해자와 사망한 고문피해자의 유족은 포함되지만 생존한 고문피해자의 가족³⁵⁾은 그 대상이 아님.

그런데 당사자의 고문 피해가 가족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로 전이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STD)를 겪는 사례가 많고³⁶⁾, 안 제4조는 국가가 고문피해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적절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³⁷⁾, 안 제16조의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참고로, 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관련된 법률에서 당사자의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규정하고 있음³⁸⁾.

다음으로 안 제17조 제목과 제1항은 “전문의료센터”라고 하는 반면,

35)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36) 국가인권위원회,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1.10., p.145

37) **안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하여 적절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하여야 하며, 향후 고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료지원)**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한다.

⑤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동조 제2항은 “전문의료치유센터”라고 하고 있어 용어의 통일이
필요함.

사. 보상금등 지원 절차(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제22조(보상금등의 지급 및 지원의 이용 신청) ①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6조의 상담·치료프로그램, 제17조의 고문피해자 전문의료센터 및 제18조의 법률지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24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재심의) ① 위원회가 제23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제24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26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28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9조(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관한 소송은 보상·지원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90일이 지났을 때(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보상·지원 신청이 있는 날부터 120일을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가 보상·지원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고(행방불명 시에는 120일 이내), 보상·지원에 대해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고문피해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재심의에서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함.

제정안의 보상금등의 신청·지원 절차는 유사 입법례와 동일·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 ‘보상금등 지원 절차’ 유사 입법례 비교 >

	민주화보상법	5·18보상법	부마항쟁보상법	제정안
신청 기간	2015.5.18. ~ 2015.11.18.	2023.7.1. ~ 2023.12.31.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후 6개월 이내	—
위원회 심의·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방불명 시 120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방불명 시 120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방불명 시 120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방불명 시 120일)
결정서 송달	결정 후 30일 이내	결정 후 30일 이내	결정 후 30일 이내	결정 후 30일 이내
재심의 신청	송달을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	송달을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	송달을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	송달을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결정	60일 이내	60일 이내	60일 이내	60일 이내
보상금등의 양도·압류금지	○	○	○	○
국세·지방세 면제	○	○	○	○
결정전치주의	○	○	○	○

- 다만, 제정안은 유사 입법례와 달리 보상금등의 ‘신청 기간’을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³⁹⁾, 고문피해자로 결정된 뒤에도 장기간 보상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피해의 확대 및 증거 멸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 제12조에 따라 고문피해자로 결정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 신청 기간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보상금등에 대한 조세 면제를 규정한 안 제28조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는 개별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⁴⁰⁾ 등 세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39) 다만, 안 제22조제1항은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등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대통령령’에 신청 기간을 규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40)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특례규정 신설 등 감면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⁴¹⁾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조세 면제’ 부처 의견 >

제정안	기획재정부 수정 의견	행정안전부 수정 의견
제28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8조(지방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8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보상금등을 규정한 다수 입법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안처럼 직접 ‘조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 ‘조세 면제’ 유사 입법례 >

법률	조세 면제 규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조세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5(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문 의 처

02)6788-5075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이하생략)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